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30명(5급 1명, 6급 8명, 7급 4명, 9명 17명)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,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1명(8급 1명)을 감원하며, 정책·집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17명(경위 8명, 경감 9명)의 직급을 상향 조정(경감 8명, 경정 9명)하는 한편,

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행정법무담당관실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, 지방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인 경비과 및 경비안전과에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사무를 신설하며, 동해 및 서해 접경해역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 보안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제 호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혁신기획재정담당관·행정법무담당관”을 각각 “기획재정담당관·혁신행정법무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혁신기획재정담당관”을 “기획재정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4. 각종 지시사항의 총괄·관리
5.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

제3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행정법무담당관”을 “혁신행정법무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·선정, 추진상황 확인·점검 및 관리
2. 업무처리절차의 개선,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·지원
3.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·운영
4.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

5.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·집행

제25조제5호 중 “기획 및 지도”를 “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

제27조제8호 중 “대테러”를 “해양에서의 대테러”로, “기획 및 지도”를 “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

제30조제1항 단서 중 “보령해양경찰서”를 “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·경비구조과·해양안전과·수사과·정보과·보안팀·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두고, 보령해양경찰서”로, “해양오염방제과를 두고,”를 “해양오염방제과를 두며,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 단서 중 “3명(행정주사보·사서주사보·공업주사보·해양수산주사보·보건주사보·환경주사보·시설주사보·방재안전주사보·전산주사보·학예연구사·기록연구사·공업연구사·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)”를 “19명(5급 1명, 6급 8명, 7급 7명, 9급 3명)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 단서 중 “2명(8급 2명)”을 “1명(8급 1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4항 본문”으로 한다.

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.

다만, 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

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, 별표 7의2의 정원 중 14명(9급 14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별표 4의2 중 총 계 “456”을 “472”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 “455”를 “471”로 하며, 경정 “48”을 “49”로, 경위 “80”을 “79”로, 일반직 계 “90”을 “106”으로 하고, 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학예연구관·기록연구관·보건연구관·시설연구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“1”을 “2”로, 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해양수산주사·보건주사·환경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·학예연구사·공업연구사·해양수산연구사·시설연구사·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“4”를 “12”로, 행정주사보·사서주사보·공업주사보·해양수산주사보·보건주사보·환경주사보·시설주사보·방재안전주사보·전산주사보·학예연구사·기록연구사·공업연구사·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“6”을 “8”로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다음에 “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방재안전주사보·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”를 신설하고, 공업주사보·해양수산주사보·보건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 다음에 “공업주사보·해양수산주사보·보건주사보·사회복지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”을 신설하며, 행정

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보건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4”를 “6”으로, 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보건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다음에 “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보건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5의2 중 총계 “199”를 “198”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 “198”을 “197”로 하며, 일반직 계 “32”를 “31”로 하고, 공업서기 · 해양수산서기 · 보건서기 · 간호서기 · 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“2”를 “1”로 한다.

별표 7의2를 신설한다.

해양수산부령 제3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“정원 2명(공업서기 · 해양수산서기 · 보건서기 · 간호서기 · 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명)”을 “정원 1명(공업서기 · 해양수산서기 · 보건서기 · 간호서기 · 환경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명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·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인천·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의 소관사무는 각각 해당 해양경찰서 정보과에서 수행한다.
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4의 2의 정원 16명(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학예연구관·기록연구관·보건연구관·시설연구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1명, 행정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해양수산주사·보건주사·환경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·학예연구사·공업연구사·해양수산연구사·시설연구사·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8명, 행정주사보·사서주사보·공업주사보·해양수산주사보·보건주사보·환경주사보·시설주사보·방재안전주사보·전산주사보·학예연구사·기록연구사·공업연구사·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방재안전주사보·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, 공업주사보·해양수산주사보·보건주사보·사회복지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, 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해양수산서기보·보건서기보·환경서기보·시설서기보·방재안전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, 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해양수산서기보·보건서기보·환경서기보·시설서기보·방재안전서기보

· 전산서기보 · 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) 및 별표7의 2의 1 4명(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보건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9명, 행정서기보 · 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5명)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제4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경감8명, 경정9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경위8명, 경감9명으로 본다.

[별표 7의2]

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(제36조제4항 단서 관련)

총 계	9,994
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	9,988
경찰공무원 계	9,129
치안정감	1
치안감	2
경무관	4
총경	39
경정	169
경감	507
경위	819
경사	1,788
경장	2,677
순경	3,123
일반직 계	859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학예연구관 · 기록연구관 ·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1
기술서기관	1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 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 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	3
기술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 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2
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 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 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학예연구관 · 기록연구관 · 보 건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· 공업연구관 · 해양수 산연구관 또는 경정	2
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	24
공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	20
행정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해양수산주사 · 보건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 주사 · 학예연구사 · 기록연구사 · 공업연구사 · 시설연구사 ·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경감	3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해양수산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공업주사 · 해양수산주사 · 보건주사 · 환경주사 또는 방재안전 주사	84 44
행정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해양수산주사보 · 보 건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방재안전주사보 · 전 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· 학예연구사 · 기록연구사 · 공 업연구사 · 보건연구사 또는 경위	1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해양수산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환 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	80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해양수산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 설주사보 · 방재안전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	164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해양수산서기 · 보건서기 · 환경서기 · 시설서기 · 방재안전서기 · 전산서기 · 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	30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해양수산서기 · 보건서기 · 환경서기 · 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	99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해양수산서기 · 환경서기 · 시설서기 ·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154
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보건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42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보건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	19
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16
행정서기보 · 조리서기보 또는 순경	41
기록연구사	4
통신운영서기	2
통신운영서기보	2
건축운영서기보	7
전기운영서기보 또는 기계운영서기보	1
선박항해운영서기보	1
선박기관운영서기보	1
사무운영서기보	8
전문경력관 나군(항공조종담당)	2
전문경력관 나군(항공정비담당)	1
2.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	6.0
일반직 계	6.0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해양수산서기 · 환경서기 · 사서서기 · 시설서기 ·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1.0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보건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4.0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보건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	1.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획조정관) ① (생 략)	제3조(기획조정관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기획조정관 밑에 <u>혁신기획재 정담당관 · 행정법무담당관</u> , 인 사담당관 및 교육담당관을 두 되, <u>혁신기획재정담당관 · 행정 법무담당관</u> 및 인사담당관은 총 경으로, 교육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.	② ----- <u>기획재정담당 관 · 혁신행정법무담당관</u> ----- ----- -- <u>기획재정담당관 · 혁신행정 법무담당관</u> ----- ----- -----.
③ <u>혁신기획재정담당관</u>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 좌한다.	③ <u>기획재정담당관</u>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 굴 · 선정, 추진상황 확인 · 점 검 및 관리</u>	3. <u>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</u>
4. <u>업무처리절차의 개선, 조직문 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 · 지원</u>	4. <u>각종 지시사항의 총괄 · 관리</u>
5. <u>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· 운영</u>	5. <u>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</u>
6. 「제안규정」에 따른 공무원 <u>제안제도의 운영</u>	<삭 제>
7. <u>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·</u>	<삭 제>

집행

8. 민원(국민제안을 포함한다)

관련 제도의 개선

9. ~ 13. (생략)

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1. ~ 8. (생략)

⑤ · ⑥ (생략)

제25조(경비과)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

<삭제>

9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-----

--.

1.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· 선정, 추진상황 확인 · 점검 및 관리

2. 업무처리절차의 개선,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 · 지원

3.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· 운영

4.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

5.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· 집행

6. ~ 13. (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경비과)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관한 기획 및 지도
<신 설>

6. ~ 14. (생략)

제27조(경비안전과)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7. (생략)

8.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
<신 설>

9. ~ 26. (생략)

제30조(해양경찰서)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·경비구조과·해양안전과·수사과·정보과·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. 다만, 보령해양경찰서 및 부안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·경비구조과·해양안전과·수사과·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두고,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·경비구조과·해양안전과·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.

-- 사항

5의2.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

6. ~ 14.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경비안전과) -----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해양에서의 대테러 -- 사항

8의2.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

9. ~ 26.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해양경찰서) ① -----

-----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·경비구조과·해양안전과·수사과·정보과·보안팀·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두고, 보령해양경찰서 -----
----- 해양오염방제과를 두며, -----

-----.

②·③ (생략)

제34조(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다만, 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, 별표 4의2의 정원 중 3명(행정주사보·사서주사보·공업주사보·해양수산주사보·보건주사보·환경주사보·시설주사보·방재안전주사보·전산주사보·학예연구사·기록연구사·공업연구사·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---.

----- 19명(5급 1명, 6급 8명, 7급 7명, 9급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

-----.

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
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
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
며, 별표 5의2의 정원 중 2명(8
급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
용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
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와
같다.

⑤ 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
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
36명(9급 36명)은 임기제공무원
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해양수산부령 제300호 해양경찰
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

----- 1명(8급
1명)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
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
같다. 다만, 「해양경찰청과 그
소속기관 직제」 제36조제1항
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
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
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
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, 별표
7의2의 정원 중 14명(9급 14명)
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⑤ 제4항 본문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해양수산부령 제300호 해양경찰
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

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<u>2명</u> (<u>공업서기·해양수산서기·보 건서기·간호서기·환경서기</u> 또는 <u>방재안전서기 2명</u>)은 2020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	의 존속기간) ----- ----- <u>1명</u> (<u>공업서기·해양수산서기·보 건서기·간호서기·환경서기</u> 또는 <u>방재안전서기 1명</u>)----- -----
--	---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[별표 4의2]

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(제34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456</u>	<u>472</u>	+16
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계	<u>455</u>	<u>471</u>	+16
·	·	·	
·	·	·	
경 정	<u>48</u>	<u>49</u>	+1
·	·	·	
경 위	<u>80</u>	<u>79</u>	-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90</u>	<u>106</u>	+16
·	·	·	
·	·	·	

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해양수 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 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 신사무관 · 학예연구관 · 기록연구관 · 보건연 구관 · 시설연구관 · 공 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· ·	<u>1</u> · ·	<u>2</u> · ·	+1
행정주사 · 사서주사 · 공 업주사 · 해양수산주사 · 보건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 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 통신주사 · 학예연구사 · 공업연구사 · 해양수 산연구사 · 시설연구사 · 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· ·	<u>4</u> · ·	<u>12</u> · ·	+8

행정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해양수 산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주 사보 · 방재안전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학예연 구사 · 기록연구사 · 공 업연구사 · 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.	<u>6</u> .	<u>8</u> .	+2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방재안 전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	1		
<u>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</u> <u>· 시설주사보 · 방재안</u> <u>전주사보 · 통계주사보</u> <u>또는 전산주사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공업주사보 · 해양수산주 사보 · 보건주사보 · 환 경주사보 또는 방재안 전주사보	8		

<u>공업주사보 · 해양수산주</u> <u>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사</u> <u>회복지주사보 · 환경주</u> <u>사보 또는 방재안전주</u> <u>사보</u> .	<u><신 설></u> .	<u>1</u> .	+1
.	.	.	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보 건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방재안 전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4</u>	<u>6</u>	+2
<u>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</u> <u>· 해양수산서기보 · 보</u> <u>건서기보 · 환경서기보</u> <u>· 시설서기보 · 방재안</u> <u>전서기보 · 전산서기보</u> <u>· 운전서기보 또는 방</u> <u>송통신서기보</u> .	<u><신 설></u> .	<u>1</u> .	+1
.	.	.	

[별표 5의2]

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(제36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99</u>	<u>198</u>	-1
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 무원은 제외한다) 계	<u>198</u>	<u>197</u>	-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32</u>	<u>31</u>	-1
·	·	·	
·	·	·	
공업서기·해양수산서기 · 보건서기·간호서기 · 환경서기 또는 방재안 전서기	<u>2</u>	<u>1</u>	-1
·	·	·	
·	·	·	